

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하세요

- 모빌리티 혁신법 시행...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위한 첫 제도적 기반
-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9일부터 접수... 혁신 역량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

-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모빌리티 혁신법’)이 10월 19일(목)부터 시행된다.
 -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지원센터 지정·운영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,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(국정과제)을 이끄는 법·제도 기반으로 의의가 크다.
- 특히,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‘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’가 도입*되면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기존 산업융합, ICT융합, 금융혁신 등 6개 규제샌드박스 외 모빌리티 특화형 제도 도입
 - ** 규제샌드박스 예시 : 자율주행 셔틀·택시, 로봇·드론 배송, 수요응답형 서비스(DRT) 등
 -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,
 -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최대 4년(2+2년)간 실증을 지원하며, 사업비,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.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하여 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.
 -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10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(www.molit.go.kr) 및 한국교통안전공단(www.kotsa.or.kr)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사업 소개와 신청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*도 진행한다.
 - * (시간·장소) 10.24(화) 14시 대전, 10.25(수) 14시 서울, 11.8(수) 14시 부산
 - (참석 대상) 모빌리티 분야 관련 기업, 협회, 지자체 등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모빌리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직접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민간의 혁신 속도를 더 높여갈 것”이라면서,
 - “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3835)
		담당자	사무관	임유현 (044-201-3838)
		담당자	주무관	김재준 (044-201-3862)



1. 배경 및 필요성 ※ 국정과제(약속05-국정28)

- 교통 분야에 혁신기술이 융·복합되면서 자율차·UAM 등 新이동수단이 등장하고 패러다임(공급자→수요자)도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대 도래
- ⇒ 민간 주도의 혁신 성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
2. 주요 내용 ※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

- (**‘모빌리티’ 개념 최초 정의**) ‘모빌리티(Mobility)’란 사람 또는 물건을 이동·운송하는 행위 등으로 각종 수단·인프라·서비스를 통칭
- (**민간 혁신지원**) 현행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주도의 실증 지원
 - (규제샌드박스) 관련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·규격·요건 등이 없거나,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시험·검증 허용
 - (특화도시) 실제 도시 단위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·서비스 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지원
 - (기타) 인력 양성, 연구·개발, 창업활성화, 국제협력 등
- (**공공 지원체계**) 안정적·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 - (모빌리티 조사 및 개선) 합리적인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전국 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, 소외지역 개선계획·개선사업 실시
 - (인프라 전환) 도시·교통시설 등 개발사업자에게 모빌리티 혁신 대책 의무 부여, 모빌리티 친화적 도로 세부설계 원칙 마련 등
 - (지원센터) 효율적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“모빌리티 지원 센터”* 지정·운영

* (역할) 규제샌드박스,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,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·운영 등 지원

참고2

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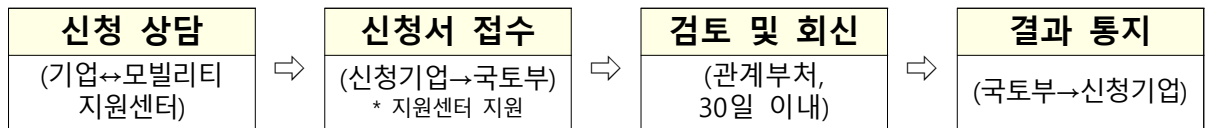
- (개념) 신제품 및 서비스가 생명·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,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**先사업허용-後규제정비**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
- (대상)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하려는 자

<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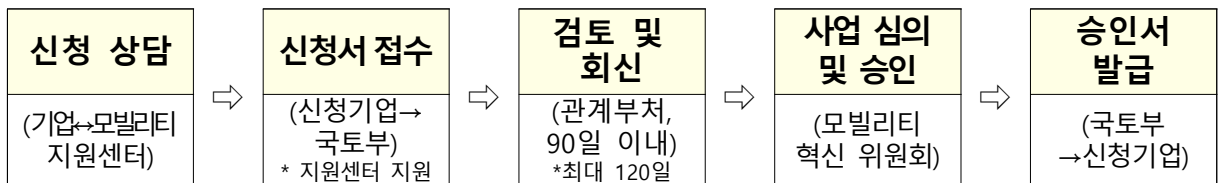
- (자율주행 셔틀·택시)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노선버스 또는 택시 서비스
- (로봇·드론 배송) 로봇, 드론을 이용한 공동주택 내 물류 서비스
- (수요응답형 서비스) 실시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서비스

□ 유형 및 절차

- (신속확인) 신청기업의 제품·서비스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 여부 및 관련 규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



- (실증특례)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험·검증 등을 위해 **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**하는 제도



- (접수처) 국토교통부(www.molit.go.kr), 한국교통안전공단(www.kotsa.or.kr) 누리집

❖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청방법

- 1」 국토교통부(molit.go.kr) > 국민참여 > 규제개혁 >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신청
- 2」 교통안전공단(kotsa.or.kr) > 자동차·도로 >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

※ 문의처 : 모빌리티 지원센터(한국교통안전공단) 054-459-7253 / sandbox@kotsa.or.kr

- (지원사항) 법률 컨설팅,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지원 등



참고3**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**

- (목적)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행(10.19)에 따라 사업 소개와 모빌리티 혁신 기술·서비스 발굴 및 다양한 건의사항 청취 등
- 시간 및 장소
 - 10.24(화) 14시 대전 (오룡역 인근 / 예람인재교육센터 3층, 열정룸)
 - 10.25(수) 14시 서울 (역삼역 인근 / GRC 역삼모임공간 B1층, 메타아트홀)
 - 11. 8(수) 14시 부산 (부전역 인근 / 지오파트너스 2층, 대강의실)
- (참석대상) 모빌리티 기업 및 관련 협회, 단체, 지자체(광역·기초)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
- (주요내용) 규제샌드박스 개요, 지원사항 및 절차 소개 등

< 설명회 세부 일정 >

시 간		내 용	비 고
14:00 ~ 14:30	30분	■ 참석자 등록	
14:30 ~ 14:35	5분	■ 인사말씀	국토교통부
14:35 ~ 15:05	30분	■ 모빌리티 규제특례 개요 및 운영절차 ■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기업 지원 사항 - 기업지원 신청 절차 - 신청서 등 서류 제출 사항	교통안전공단
15:05 ~ 15:30	25분	■ 기업 질의·건의사항 및 마무리	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

※ [참고] 규제샌드박스 사업설명회 장소

<p>10.24 (화) 대전</p>	<p>□ 주소 : 대전 동구 계룡로 814, 예람빌딩 3층, 예람인재교육센터 열정룸</p> 
<p>10.25 (수) 서울</p>	<p>□ 주소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3, 고운빌딩 B1층, GRC역삼모임공간 메타아트홀</p> 
<p>11.8 (수) 부산</p>	<p>□ 주소 :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777, 비스앰버서더호텔 2층, 지오파트너스 대강의실</p> 